

실내 공기청정장치
오존 배출 규제

캘리포니아 법규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표제 17. 공중 보건(Public Health)
3 부. 대기 자원(Air Resources)
1 장. 대기환경위원회(Air Resources Board)
8.7 절 실내 공기청정장치
제 1 항. 실내 공기청정장치

제 94800 조. 적용 대상

제 94803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조항은 점유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의 의료장치와 비의료 장치를 포함하는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 판매, 공급 및 판매 제의 또는 상업용으로 소개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 94801 조. 용어 정의

(a)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의 정의를 적용한다.

- (1) “공기 환기율”(Air exchange rate)이란 실외 공기가 특정한 공간에서 실내 공기의 양을 대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2) “ANSI”란 미국 국립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를 의미한다.
- (3a) “ANSI/UL 표준 제 507 호”란 미국 보험업자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가 2007년 9월 27일 공표한 전기 팬 안전을 위한 ANSI/UL 표준 제 507 호(ANSI/UL Standard 507 for Safety for Electric Fans) 제 9 판을 의미한다.
- (3b) “ANSI/UL 표준 제 867 호”란 보험업자 안전시험소(UL)가 2007년 12월 21일 공표한 ‘정전기 공기청정기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4 판 및 UL 이 2008년 3월 4일, 2008년 4월 17일, 2008년 4월 18일, 2009년 7월 8일, 2009년 7월 9일 그리고 11월 23일에 공표한 관련 인증 요건 결정(Certification Requirement Decisions)을 의미한다.
- (3c) “ANSI/UL 표준 제 484 호”란 2007년 12월 21일 공표되고 2009년 3월 27일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2009년 3월 27일 ANSI의 승인을 받은 실내용 에어컨(room air conditioners) 안전을 위한 ANSI/UL 표준 제 8 판을 의미한다.
- (3d) “ANSI/UL 표준 제 1278 호”란 2000년 6월 21일 공표되고 2008년 7월 30일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2008년 7월 30일 ANSI의 승인을 받은 이동형,

벽걸이형 또는 천장형 실내용 전자 히터 안전을 위한 ANSI/UL 표준 제 3 판을 의미한다.

- (3e) “ANSI/UL 표준 제 1017 호”란 2001년 12월 7일 공표되고 2006년 6월 15일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2006년 6월 15일 ANSI의 승인을 받은 진공 청소기, 송풍형 청소기 및 가정용 바닥 마감기의 안전을 위한 ANSI/UL 표준 제 7 판을 의미한다.
- (3f) “ANSI/UL 표준 제 1993 호”란 2009년 8월 28일 공표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및 램프 어댑터 안전을 위한 ANSI/UL 표준 제 3 판을 의미합니다.
- (4) “ARB”란 캘리포니아주 대기 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를 의미한다.
- (5)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란 해당 기호가 표시된 제품의 대표 견본이 특정 품질 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인 시험 기관이 사용하는 기호를 의미한다. 이 법규에서 이해 관련 기관은 실내 공기청정장치 관련 ANSI/UL 표준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 공인 시험소이다.
- (6) “CCR”이란 캘리포니아 법규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을 의미한다.
- (7) “CFR”이란 미국 연방 법규집(U. S.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한다.
- (8) “농도(Concentration)”란 다른 물질의 단위량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물질의 양을 의미한다.
- (9) “미미한 최소량(de minimis)”이란 너무나 작거나 미세하여 법에서 참고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수량을 가리킨다.
- (10) “유통업자(Distributor)”란 재판매 또는 상업용 유통을 위해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11) “방출(Emission)”이란 물질이 환경으로 발산 또는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 (12) “집행관(Executive Officer)”이란 대기환경위원회의 집행관 또는 집행관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 (13) “반감기(Half-life)”란 어떤 물질의 농도가 처음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 (14) “실내 공기청정장치(Indoor air cleaning device)”란 밀폐된 공간 내부의 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알레르기 항원, 미생물(예: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및 기타 미생물), 먼지, 입자, 연기, 연무, 가스 또는 증기, 냄새나 화학물질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기 중 부유 오염물의 농도를 줄이는 기능을 지닌 에너지 사용 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치는 여하한 크기의 방안이나 주택 또는 건물 전체 내부 또는 자동차 내부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여하한 크기의 휴대용 장치 및 벽, 천장, 기동 또는 기타 다른 실내 표면에 부착되도록 설계된 개별 장치 등이 해당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5) “산업용(Industrial use)” 또는 “산업 용도(Industrial application)”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존을 사용하는 것을 의한다.

- (A) 산업용 공장, 수처리 시설, 지방 자치체의 수도 시설 또는 유사 시설 및 수영장 및 스파용 용수 정화
- (B) 농업용 처리 시설, 냉장 운송 트럭 또는 관련 시설 내 농산물의 미생물 박멸
- (C) 전자제품, 의약, 생명공학 및 화학 산업 내 화학적 산화 및 소독
- (D) 펄프 및 제지 산업 내 표백 및 기타 처리 목적
- (E) 산업용 연도기체 또는 폐수 처리 시설의 악취 제거
- (F) 호텔 산업 내 악취 및 연기 제거.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G) 곰팡이 제거.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H) 화재 및 매연 피해 복구.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I) 자동차 리컨디셔닝 및 내/외장 관리 산업 내 악취 관리.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16) “라벨(Label)”이란 무관한 내용과 분리되어 있으며, 읽기 쉬운 형식으로 의무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제품 포장 위에 인쇄되어 있거나 2012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공기 청정기의 경우 접착 스티커 형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

(17) “리스팅 마크(Listing mark)”란 해당 기호가 표시된 제품의 대표 견본이 UL의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UL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의미한다. 해당 안전 기준은 공기 청정장치 안전에 관한 경우 UL 전국 공인 표준 제 867 및 제 507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타 기기 및 장치는 해당되는 경우 표준 제 484호, 제 1017호, 제 1287호 및 제 1993호에 제시되어 있다.

(18) “제조업자(Manufacturer)”란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수입, 제조, 조립, 생산 또는 포장하는 자를 의미한다.

(19) “의료 장치(Medical device)”란 미국 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표제 21의 제 321조 (h)항에 정의된 “장치”를 의미한다.

(20) “기계식 여과 전용(Mechanical filtration only)”이란 비전자식 기술인 물리적 장벽을 사용한 여과 방식을 통해서만 공기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기를 여과 매체 사이로 강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과 매체 구성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활성탄, 종이, 발포제(foam), 합성물, 세라믹 또는 천연 섬유 등의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21) “모델군(Model group)”이란 설계, 작동 기능, 기기 출력 및 성능 특성 등이 같으며 제조업자도 같은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의미한다. 같은 모델군에 속해도 서로

다른 상표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색상, 리모컨 또는 오존발생과 무관한 그 밖의 미관적 특성과 같이 장식적인 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기기들은 동일한 모델군에 속한다.

- (22) “NIST”는 미국 국립 표준 과학 기술원(U. 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을 의미한다.
- (23) “비의료용 장치(Non-medical device)”는 상기 “의료 장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의미한다.
- (24) “NRTL”이란 연방법규집 표제 29 의 제 1910.7 조에 따라 U. S.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한다.
- (25) “점유 공간(Occupied space)”이란 주택, 아파트, 병원 및 사무실과 같이 사람이 장기간 점유하도록 의도된 밀폐 공간을 의미한다.
- (26) “OSHA”이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U. 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 (27) “포장(Packaging)”이란 제품을 포함, 동봉, 통합, 배달, 분배, 포장 또는 저장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소비자 또는 기관용 제품을 둘러싸는 재료를 의미한다. “포장”은 주 표시면 및 기타 수반 문구 또는 도표가 물품위에 또는 안에 통합, 식각,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장”은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부차적인 용기를 지칭하지 않는다.
- (28) “ppm”이란 백만 분의 1 의 부피용량을 뜻하는 농도 측정 단위이다. 이 법규의 목적에 따라 부피용량의 고려 대상은 공기이며 관련 물질은 오존이다.
- (29) “소매업자(Retailer)”는 소비자에게 직접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판매, 공급 또는 판매 제안하는 자를 의미한다.
- (30) “공급(Supply)”이란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 (31) “UL”이란 보험업자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를 의미한다.
- (32) “U. S.” 는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의미한다.

제 94802 조.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표준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94803 조(제외 및 면제)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 법규의 발효일로부터 24 개월부터는, 해당 장치가 제 94804 조의 규정에

따라 오존 방출 농도가 0.050 ppm 을 초과하지 않음을 ARB 가 인증하고, 제 94806 조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제 94805 조의 시험 절차에서 규정한 오존 방출 한도를 포함하여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점유 공간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용도를 가진 실내 공기 정청기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 공급 또는 판매 제의 또는 상업용으로 도입할 수 없다.

제 94803 조. 제외 및 면제

- (a) **산업용:** 이 조항의 규정은 상기 제 94801 조 (a)(15)항에 규정된 대로 산업용을 위해서만 제조, 광고, 판매, 라벨 표시 및 사용되는 실내 공기청정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제품은 산업용품 직판점 또는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라벨이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오존 방출 제품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 (b) **인덕트(in-duct) 시스템:** “인덕트 시스템”과 같이 중앙 난방,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의 일부로만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설계, 판매 및 사용되는 공기청정장치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94804 조. 인증 요건

- (a) 제 94802 조의 규제를 받는 각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각각의 제조업자는 다음의 주소로 ARB 집행관에게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O. Box 2815, Sacramento, CA 95812, Attn: Indoor Air Cleaning Device Certification. 인증 신청서 상의 정보는 반드시 사실이며 정확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전문가 협회 또는 인증 기관이 해당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제조업자 및 시험기관 대표자의 서명과 필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94805 조 (d)항의 성능 명세에 부합하는 시험소가 제 94805 조에 제시된 시험 방법을 준수하였음이 확인되면, ARB 는 해당 실내 공기청정장치가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를 위한 인증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한다. 인증은 제조업자에게 교부되며, 제조업자는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b) 오염물 제거를 위한 기계식 여과법만을 사용하는 모든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오존 방출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 94805 조에 제시된 0.050 ppm 오존 방출 표준 관련 시험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의 오존 방출 시험 면제에 대한 확인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제출한 제품 설계 사양서 및 문서를 기준으로 ARB 집행관이 수행한다. ARB 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해당 모델의 구성도 및 개념도 뿐만 아니라 사용된 공기 청정 성능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의 자격을 갖춘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제 94801 조에 규정된 대로 참고 조항으로 이에

통합되어 있는 ANSI/UL 표준 제 507 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의 자격을 갖춘 공기 청정 요소를 포함하나 다른 ANSI/UL 표준에 따른 전기 안정성 시험을 받는 다목적 장치는 해당 ANSI/UL 표준에 따라 전기 안정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본 법규가 제정되기 전 ANSI/UL 표준 제 507 호 또는 다른 해당 ANSI/UL 표준에 따라 전기 안전성을 인증받은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는, ANSI/UL 표준 507 또는 관련 ANSI/UL 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모델이 해당 표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 추가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본 법규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제조업자는 제 94804 조 (c)(1)항부터 제 94804 조 (c)(3)항 이하 및 제 94804 조 (c)(4)(A)항 및 제 94804 조 (c)(4)(F)항 이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품은 여전히 제 94806 조 (b)항 및 제 94806 조 (d)항에 제시된 라벨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 상기 제 94804 조 (b)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청정장치의 경우, 인증 신청서에는 (c)(1)항에서 (c)(5)항 이하에 제시된 정보 및 ARB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된 정보가 해당 실내 공기청정장치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집행관이 신청인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 집행관은 요청된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 (1) 제조업자 이름, 우편물 발송용 주소, 실제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본 인증 업무 관련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 (2) 제조업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이름, 우편물 발송용 주소, 실제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실내 공기청정장치 정보

- (A) 상표명
- (B) 모델명
- (C) 모델번호
- (D) 시험용으로 제출된 장치의 일련번호(해당 시)
- (E) 시험용으로 제출된 장치의 제조일자
- (F) 모델군 및 모델군에 포함된 기타 모델, 해당 시
- (G) 작동 및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
- (H) 작동을 나타내는 장치 개념도
- (I) 유지보수 요건
- (J) 작동 안내서, 해당 시
- (K) 마케팅 자료, 해당 시

(4) 실내 공기청정장치 시험 정보

- (A) 시험 시설 증명 및 현재 국가 공인 시험소(NRTL) 인가 증명서
- (B) 제 94805 조에 따라 측정된 모든 시험 완료 기기의 오존 방출 농도. 24 시간 측정치 및 일시 측정치가 0.050 ppm 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
- (C) 최종 인증 시험 중 이유를 막론하고 오존 방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그러할 경우 해당 사유(예: 과도한 일시 이탈, 시험 중 모터 고장, 포장이 훼손된 장치, 지속시 전기부품 과열 및 불안정 한 경우 등)를 제시.
- (D) 시험 장치의 관리 체계
- (E) 오존 방출량이 2007년 12월 21일 수정된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 및 UL 이 공표한 관련 인증 요건 결정의 프로토콜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시험소의 진술서
- (F) 시험된 모든 장치가 ANSI/UL 표준 제 867 호, ANSI/UL 표준 제 507 호 또는 해당 시 기타 ANSI/UL 표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시험소 또는 인증 기관의 통지서

(5) 시험소가 전달하여야 하는 추가 정보

- (d) 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를 받을 것 또는 미비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 등에 대해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신청서 접수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증 승인 또는 거부 여부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러한 시한은 집행관이 정상을 참작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e) 해당 실내 공기청정장치가 ANSI/UL 표준 제 867 호 또는 ANSI/UL 표준 제 507 호 중 해당되는 표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사후 인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0 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f) ARB 는 제 94805 조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시험테스트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다른 ARB 인증 요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못하는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4805 조. 시험 방법

- (a) 본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한 모델군 내에 있는 경우 오직 하나의 실내 공기청정장치 모델만 해당 시험 방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 (b) 이 조항의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제 94801 조 규정에 따라 참고 조항으로 이에 통합된 ANSI/UL 표준 제 867 호 또는 ANSI/UL 표준 제 507 호 중 해당되는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 94801 조에 따른 실내 공기청정기기의 정의를 만족하는 공기 청정 요소를 포함하나 주 목적이 공기 청정이 아닌 기구의

경우 주 목적에 해당하는 ANSI/UL 전기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각각의 제 94801 조 (a)(3c)항, 제 94801 조 (a)(3e)항, 제 94801 조 (a)(3d)항 및 제 94801 조 (a)(3f)항에 정의된 대로 참고 조항으로 이에 통합된 ANSI/UL 표준 제 484 호, 1017 호, 1278 호 및 1993 호를 포함한다.

- (c) 오존 방출 여부는 제 94801 조에 정의된 대로 참고 조항으로 이에 통합되어 있는 ANSI/UL 표준 제 867 호의 제 37 조 및 관련 인증 요건 결정을 통해 판정하도록 한다.

- (d)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시험은 ANSI/UL 표준 제 867 호, ANSI/UL 표준 507 호 또는 해당 시 기타 UL 또는 ANSI/UL 표준 전체에 대한 시험 수행을 위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현재 NRTL 로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인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NRTL 은 OSHA 보충 프로그램 2, 3, 4, 5 및 6 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등재부(Federal Register) 제 60 권 12980~12985 페이지에 공표(1995년 3월 9일)되어 있으며, ANSI/UL 표준 제 507 호, 867 호 또는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전자 안전 시험에 대한 참고 조항으로 이에 통합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NRTL 은 또한 OSHA 보충 프로그램 10(Satellite Notification and Acceptance Program 또는 “SNAP”라고 함)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전자 안전 시험에 관하여 연방등재부(Federal Register) 제 74 권 923~927 페이지에 공표(2009년 1월 9일)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10(SNAP) 시설로부터 검증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2 에서 6 까지의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 오존 시험은 NRTL 또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에서 규정한 오존 방출 시험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ARB 감사를 통과한 보충 프로그램 2 시험 기관을 활용하는 NRTL 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ARB 감사는 필기시험 프로토콜 운영 절차, 시험실 및 분석기 구성, 주변 오존 측정치, 공기 교환율, 오존 반감기 시험 결과, 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검토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감사 시 또한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 시험 프로토콜 및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 시험이 수행되는 시험기(chamber)의 성능에 대한 내부 감사 보고서 및 여하한 관련 후속 내부 감사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4806 조. 라벨 표시 및 안전 마크 요건

- (a) 모든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기 이전 제 94804 조의 요건을 이수한 후 제품 포장에 [제 94801 조 (a)(16)항에 정의된 대로] 오존 배출 인증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제 94803 조에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법규의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인증 시험을 위해 공인 시험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본 법규의 발효일로부터 18 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일까지 제 94804 조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경우 본 절의 라벨 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ARB 가 보낸 제품 인증 통지서의 소인 날짜로부터 180 일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2010 년 10 월 18 일까지 인증을 받은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2011 년 10 월 18 일까지 패키지 상에 필수 라벨 표시 없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며 2012 년 10 월 1 일까지 부착형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 (b) 비의료용 장치의 경우 라벨은 최소 가로 1 인치 세로 2 인치 크기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본 공기청정기는 연방정부의 오존 방출 한계를 준수합니다. ARB 인증 필.” 이 문구를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대문자의 높이는 최소 3mm 이어야 한다.
- (c) 의료용 장치의 경우, 라벨은 연방법규집, 표제 21, 제 801.415 조를 포함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라벨은 또한 “ARB 인증 필” 표시가 있어야 한다.
- (d) 모든 (의료 및 비의료용)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제 94804 조 및 제 94805 조의 요건을 이행하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기 전 해당 NRTL 안전 인증 기관의 ANSI/UL 표준 제 867 호 요건에 따라 해당 장치에 ANSI/UL 표준 제 867 호 안전 인증 마크 또는 리스팅 마크를 게시해야 한다. 단 제 94803 조에 명시된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장치는 예외로 한다. 제 94801 조 (a)(20)항 및 제 94804 조 (b)항에 명시된 대로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에 해당되는 장치는 ANSI/UL 표준 제 507 호 인증 마크를 게시하여야 한다.
- (e)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 또는 판매되지만 제 94804 조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비산업용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해당 장치가 판매용으로 광고 또는 전시되는 주요 웹페이지, 카탈로그 페이지 및 관련 자료상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로 배송 불가.”

제 94807 조.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통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 판매, 공급, 판매제의 또는 상업용으로 도입되는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제조업자는 ARB 가 채택하고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된 최종 법규의 정확한 사본을 이 법규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회사의 알려진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제공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는 우편발송된 자료의 출력본 및 ARB 집행관에게 제출한 각 주소별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관련 발송목록을 포함한다. 이메일 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는 해당 이메일 사본, ARB 집행관에게 제출한 각 이메일의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1 장, 4 절(기록의 공개), 제 91000 조에 명시된 대로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최초 통지서를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발송한 이후 알게된 새로운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의 경우, 제조업자는 유사한 통지서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연락처 정보를 ARB 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 94808 조. 기록 유지 규정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판매자 및 시험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공급, 판매 제의, 상업용으로 소개 또는 판매용으로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생산, 품질 관리, 판매 및 시험 기록을 최소 3년동안 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ARB 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1 장, 4 절(기록의 공개), 제 91000 조에 명시된 대로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

제 94809 조. 거부, 취소, 회수 및 처벌

이 법규의 어느 조항이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신청이 거부되거나 인증이 취소 또는 유예될 수 있다. 집행관이 이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위반사항에 연루되거나 영향을 받은 제품을 회수하여 이 조항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 법에 따른 기타 다른 모든 처벌 또한 적용된다.

제 94810 조. 분리가능성

본 조항의 각 부분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조항의 여하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하다.